의안번호	2200147
의 뢰 인	전진숙 의원
회 답 일	2024.06.13.
추계번호	24C03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조 9,163억원, 2029년 11조 1,145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0조 1,356억원(연평균 12조 27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제1항)	12.9	12.4	12.0	11.6	11.1	60.1	12.0
– 국비	9.8	9.4	9.1	8.8	8.4	45.4	9.1
– 지방비	3.2	3.0	2.9	2.8	2.7	14.7	2.9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0~17세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12.)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아동 수를 적용하되, 아동수당 지급률은 2024년 기준 97.2%를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국고보조율은 현행 사업의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인 0~17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인 기존 0~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18세 미만 아동수에 1인당 월 지급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향후 5년간 총 71조 7,364억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천명, 만원, 개월, %,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 지급대상자 수(A)	6,625	6,358	6,136	5,931	5,700	30,751	6,150
월 지급액(B)	20	20	20	20	20	-	20
지원개월 수(C)	12	12	12	12	12	-	12
평균 지급률(D)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	**15.5**	**14.8**	**14.3**	**13.8**	**13.3**	**71.7**	**14.3**
- 국비	**11.7**	**11.2**	**10.8**	**10.5**	**10.0**	**54.2**	**10.8**
- 지방비	**3.8**	**3.6**	**3.5**	**3.4**	**3.3**	**17.6**	**3.5**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5년간 총 11조 6,008억원으로 추계됨

[표 3]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 : 2025~2029년

(단위: 천명, 만원, 개월, %,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 지급대상자 수(A)	2,177	2,046	1,953	1,898	1,872	9,946	1,989
월 지급액(B)	10	10	10	10	10	50	10
지원개월 수(C)	12	12	12	12	12	60	12
평균 지급률(D)	97.2	97.2	97.2	97.2	97.2	-	97.2
합계(A×B×C×D)	**2.5**	**2.4**	**2.3**	**2.2**	**2.2**	**11.6**	**2.3**
- 국비	**1.9**	**1.8**	**1.7**	**1.7**	**1.6**	**8.8**	**1.8**
- 지방비	**0.6**	**0.6**	**0.6**	**0.6**	**0.5**	**2.8**	**0.6**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가 바뀔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0조 1,356억원(연평균 12조 271억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15.5	14.8	14.3	13.8	13.3	71.7	14.3
현행 지급 기준 유지시 총재정소요(B)	2.5	2.4	2.3	2.2	2.2	11.6	2.3
추가재정소요(C=A-B)	12.9	12.4	12.0	11.6	11.1	60.1	12.0
- 국비	9.8	9.4	9.1	8.8	8.4	45.4	9.1
- 지방비	3.2	3.0	2.9	2.8	2.7	14.7	2.9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장래인구추계」(중위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